

대전보건대학교 장애학생 지원 규정

2011. 07. 01. 최초제정

2012. 08. 01. 부분개정

2016. 04. 01. 부분개정

2017. 05. 01. 부분개정

2018. 02. 01. 부분개정

2020. 01. 01. 부분개정

2021. 11. 01. 부분개정

2024. 03. 01. 부분개정

2024. 10. 01. 부분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대전보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79조의2에 의거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지원과 시설·설비 등을 지원하여 고등교육 기회 확대는 물론 만족스러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2.01.>

제2조(조직) <삭제 2018.02.01>

제3조(장애학생의 범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애학생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말한다.

제2장 장애학생지원센터

제3조의2(조직) ①센터는 학생·취업처에 두며, 센터의 장은 학생·취업처장이 겸직하고, 임기는 학생·취업처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01.01.>

②센터의 장은 센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센터를 대표한다.

③센터에는 장애학생 지원업무 담당자를 둔다.<신설 2018.02.01.>

제4조(기능) 센터는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 학습권 보장 및 복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항의 지원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02.01>

①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

②장애학생의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③교수학습·생활복지·상담·진로·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④장애학생 지원정책의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⑤장애학생 도우미 및 장애학생 관련 자원봉사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⑥장애학생의 지원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⑦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⑧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21.11.01.>

- ⑨기타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제5조(장애학생특별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①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 ②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 ③위원회 제 규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사항
- ④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법으로 정하는 사항
- ⑤기타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취업처장이 되며, 기획처장, 미래융합사업처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사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11.01., 2024.03.01., 2024.10.01.>

③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학생팀 담당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11.01.>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열거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01.01.>

③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토의내용과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원신청) ①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총장에게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청구) ①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총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사청구(별지 제1호 서식)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총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서면의결) 위원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관계교직원이나 전문가, 학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관계부서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부서·학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간사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장학금 지급 및 평가

제16조(장학금 지급) 장애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평가) ① 장애학생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요인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년 1회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②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장애학생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자료로 이용하며, 개선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연계되도록 환류체계를 강화한다.

③ 평가 및 설문조사는 학생·취업처 평가지침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 2020.01.01.>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조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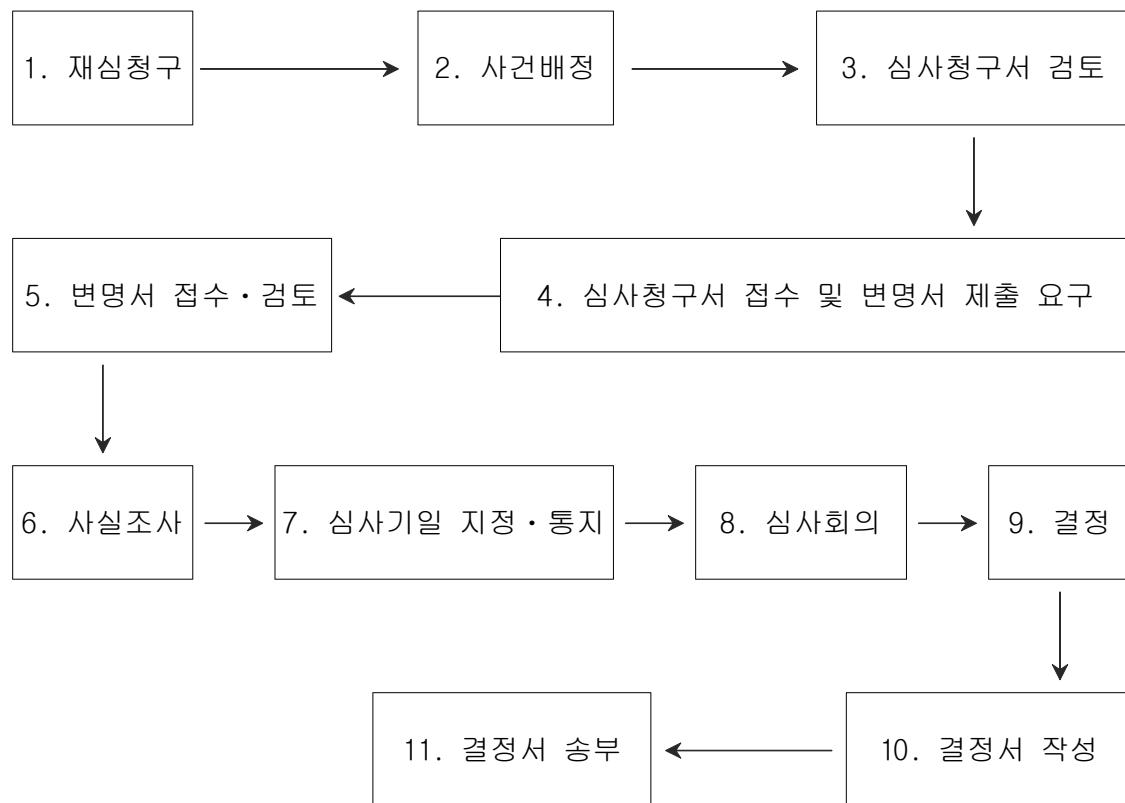
심사청구서				
① 사 건				
② 청구인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소속			
③ 피 청 구 인				
④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⑤ 재심청구의 취지				
⑥ 재심청구의 이유				
⑦ 기타 입증자료				
⑧ 근 거 법 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뒷 면)

1.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 ① 사 건 명: ○○ 처분 취소 청구
 - ② 피청구인: 처분권자를 말함
 - ③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년 월 일자
○○ 처분
 - ④ 심사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 ⑤ 심사청구의 이유: 청구의 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
 - ⑥ 기타 입증자료: 본 건과 관련 있는 제반증거 및 참고자료
- * 심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자료로 제시 가능

2. 심사절차



[별지 제2호 서식]

심사결과통지서				
① 사 건				
	성명		성별	
②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소속			
③ 피 청 구 인				
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 는 처 분 내 용				
⑤ 심사 결과				
⑥ 근 거 법 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청구인	귀하			